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7일, 윤건영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건영의원)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진 성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물이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수적임에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보강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고,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함.

그런데 내진 성능 확보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여 지진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

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건축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내진 성능 확인을 받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2027년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개정안을 통해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많은 건축주들이 자발적으로 내진성능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내진성능이 있는 건물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윤건영의원안과 정부안은 취득세 감면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윤건영의원안은 내진성능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인 반면, 정부안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임.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도와 관련하여 윤건영의원안이 정부안보다 취득세 감면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더 많은 건축주들이 내진성능을 확인받도록 유도하는데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내진 비용에 소요된 비용만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지방세수의 지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재산세 감면의 정도와 관련해서 윤건영의원안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안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내진설계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현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를 경감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4항)

개정안을 통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신축건물 중에서 지진안전 인증건의 수가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